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19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의자 : 서영교 · 박희승 · 임오경

윤준병 · 위성곤 · 양부남

김문수 · 이성윤 · 박홍배

김태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u>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p>	<p>----- -----<u>201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u> ----- ----- ----- ----- ----- ----- ----- -----.</p>
<p>1. ~ 1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p>	<p>1. ~ 13. (현행과 같음) ② ----- ----- -----. ----- -----<u>2027년 12월 31일-----</u> ----- ----- ----- -----.</p>
<p>1. ~ 22. (생략) ③ ~ ⑤ (생략)</p>	<p>1.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p>